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

제출년월일 : 1979.

제출자 : 정 부

의안 번호	
----------	--

제안이유

가. 1973년의 세계 에너지파동을 계기로 열관리법을 제정(1974. 1. 4. 법률 제2673호) 시행하고 있으나 동법은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열 및 연료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열효율과 안전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에너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동법을 폐지하고,

나. 에너지관리대상에 전기, 태양열[✓] 등 신 에너지를 포함하며, 관리대상부문에 있어서도 산업부문 이외에 주택, 수송^① 등 국민경제의 전 분야로 확대하는 동시에 특히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분야와 대형 아파트단지 등에 있어서는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등의 집단에너지공급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
~~정 부~~
 P-40P

다. 지금까지 행정규제 위주의 에너지관리 시책을 금
정세제상의 지원등 유인정책을 병행 실시하며, 이
를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을 연
차적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열관리
협회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개편·유음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④ 주요골자

- 가. 에너지의 대상에 연료 및 열 이외에 전기를 주
가함. (안 제2조제1호)
- 나.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직정을 기하기 위
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에너지소
비절감목표를 설정·실시하게 함. (안 제3조 및
안 제5조).
- 다. 일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자재의 광고시에도 에너지
소비효율의 표시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6조)

라.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사용에너지의 전환 및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등 에너지사용등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7조)

마.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 8조)

바. 에너지 절약형기자재의 제조 및 시설의 설치사용등의 사업에 금융, 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기타 행정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9조)

사. 일정량[㉡]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를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에너지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며, 에너지관리진단과 지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0 조 내지 안 제 15조)

아. 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설비, 온수설비, 환기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6조)

자. 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내의 냉난방온도에 관한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에게는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7 조)

차. 동력자원부장관은 차량에 대하여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 주행거리를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8 조)

카. 열사용^회기자재의 제조업 허가·형식승인·시공업지정·기기검사^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 19 조 내지 안 제 37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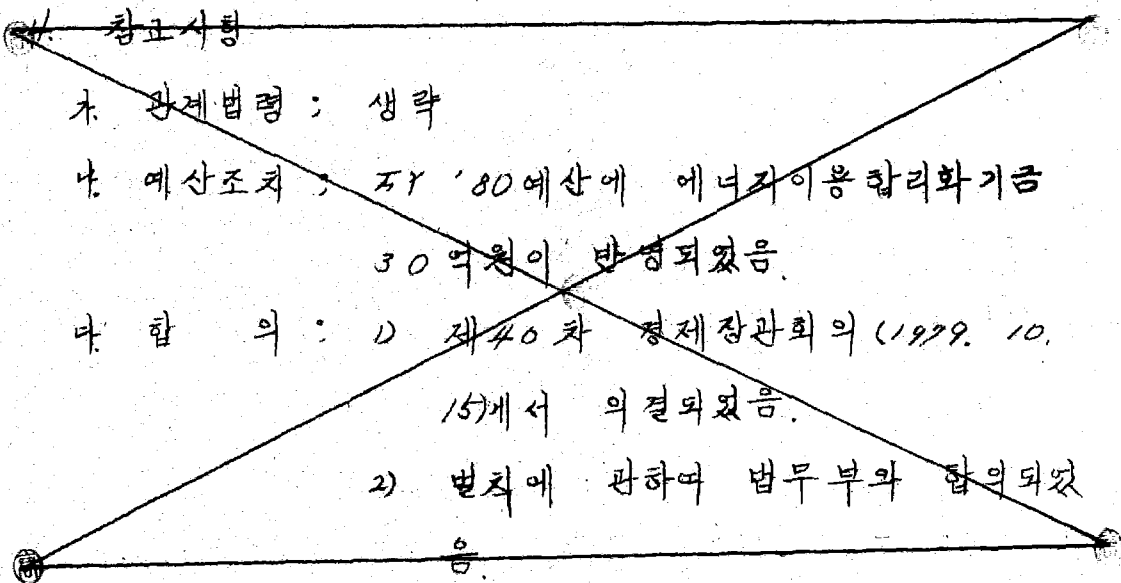
다.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장·공업단지·대형건물 및 주거지역^등의 열병합발전 및 집단난방, 공업단지 및 발전소^등의 산업폐열이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38 조 및 안 제 39 조)

파. 열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허가 및 열공급규정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경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40 조 내지 안 제 47 조)

하. 정부출연, 기타 주입을 재원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형기자재의 개발·연구 및 등기자재의 설치의 시공에 대한 응자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 48 조 내지 안 제 51 조)

거. 에너지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운영, 관리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 52 조 내지 안 제 71 조)



이 법 제 38 조제 2 항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집단 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또는 제 39 조제 1 항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한 바,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환경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증개정법률이 이 법과 함께 제 103 회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증개정법률을 이 법 보다 앞서 또는 동시에 의결하는 경우 이 법 제 38 조제 2 항 및 제 39 조제 1 항의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환경청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원유·석유제품, 가연성 천연가스, 석탄·석탄제품(코크스를 포함한다) 및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에너지사용처"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및 기타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

- 4. "에너지 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처의 소유주 (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5.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와 기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 6.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계와 단열성 자재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시책

제3조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2. 에너지 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의 대체계획

4. 기타 에너지이용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센시스"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목표원단위)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 목표량(이하 "목표원단위"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원단위를 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소비절감 목표의 설정)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별로 에너지

소비절감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에너지소비절감목표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소비절감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소비효율표시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에너지효율표시기재"라 한다)의 제조업자(수입업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금 당해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기관으로 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고, 이를 당해 에너지효율표시기자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소비효율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에너지효율표시기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증 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효율표시기재의 광고를 할 때에는 그 광고내

응에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⑤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 사용등의 제한조치)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에너지의 전환 및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2. 에너지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3. 에너지소비를 조장하는 광고행위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각호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㉔ 동력자원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명령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㉕ 동력자원부 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공장 또는 시설의 에너지사용계획을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세제·금융상의 지원)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기자재의 제조 또는 시설의 설치시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장 부문별 에너지관리

제 10 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 ①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2. 당해 년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및 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 기차계의 현황

② 동력자원부령은 제 1항의 주정에 의한 보고를 한 에너지사용자 중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하 "일정량"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를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한다

③ 제 2항의 주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하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라 한다)중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자를 지정열관리대상자로, 전기를 사용하는 자를 지정전기 관리대상자로 구분한다.

제 11 조 (에너지관리사항등) ① 지정에너지관리 대상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료의 선택·운반·저장·검사 및 가공의 최적화에 관한 사항
2. 연료의 연소 및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3. 풍화·자연발화 및 누출등으로 인한 연료의 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4. 가열·냉각 및 전열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5. 방사·전도 및 저항등의 의한 열의 손실방지 및 폐열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및 취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
7. 저항등에 의한 전기의 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8. 전기의 동력·열등으로의 변환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④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 (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의 취소) ①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그 에너지의 사용예정량이 일정량에 미달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주장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주장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에너지관리사의 채용) ①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 또는 전기관리에 관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에너지관리사(이하 "에너지관리사"라 한다)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사는 열관리사의 전기관리사로 구분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사의 채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관리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에너지관리사가 퇴직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용·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시정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가 제 11 조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가 불충분하여 에너지관리의 목적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그 실시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 15 조 (에너지관리진단명령)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제 11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제 5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진단을 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건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 16 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생산방설비·운수설비·환기설비 및 이에 관련된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생산방은도의 제한기준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체의 생산방은도에 관한 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건축물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인을 포함한다)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이행하지

에너지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 7조제 4항의 규정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를 존용한다
- 제 8조 (목표주행거리의 공고)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차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송수단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위 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를 정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② 동력자원부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 연
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 제 19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허가등) ①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0조 (제조업허가의 절차사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1월내에 그 임원을 개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조업의 승계)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 또는 사망하거나 법인인 제조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는 그 제조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폐지 또는 재개할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 기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 일내에 이를 등력자원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제조업의 허가 취소 등) 등력자원부장관은 제
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
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
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 1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 20 조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4. 제 2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때
5. 제 2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 제 2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019~~
~~11/11~~

제 24조 (형식 승인) ① 제조업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출업자가 열사용 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동력자원부장관은 열사용기자재의 품질향상과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을 품목별로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 25조 (표시) ① 제조업자는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열사용기자재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출입업자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항의 규정 에 의한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 (형식승인의 취소) 동력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제24 조 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제24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할 때
4. 제31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제 27 조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등) ① 열사용 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

(이하 "특정별 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의 시공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특정별 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는 그 특정별 사용기자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특정별 사용기자재의 설치기준) : 특정별 사용기자재 설치의 시공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시공업의 결격사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공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시공법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1월내에 그 임원을 개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0 조(시공업의 지정회소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시공업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 2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 28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 29 조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게

-25-
278
96

본 때

4. 제 2항에서 준용하는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5. 제 13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 제 13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② 제 21 조 및 제 22 조의 규정은 시공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업자"를 "시공업자"로, "제조업"을 "시공업"으로 하고, 제 21 조 단서중 "제 20 조 제 1항 각호의 1."을 "제 29 조 제 1항 각호의 1."로 한다.

제 31 조 (자체검사등) ① 제조업자는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형식의 열사용기차재를 제조할 때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정 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 (이하 "검사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 (증설, 개조, 개체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후 30일 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종류·유효기간·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검사의 대행) ① 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요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규정)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기관이 제 31조 제 2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동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방법등과 제 1항의 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34조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등력자원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 3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 3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 35조에서 준용하는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4. 제 7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제 73 조 제 1 항의 규정 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
해 또는 기피한 때

6. 부정확 방법으로 지적을 받은 때

제 35 조 (준용 규정)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은 검사
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업자"를
검사 기관"으로, "제조업"을 "검사업무"로 한다.

제 36 조 (검사기기 조종자의 채용) ① 검사기기의 설치
자는 당해 기기를 조종할 열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기의
설치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열관리사의 채용 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은 검사기기의 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지정에너지관리 대상자"
를 "검사기기의 설치자"로 한다.

제 37 조 (검사기기의 사용금지명령등) ① 도지사는 제
7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기를 검사한
결과 위해가 발생할 원인이 될 손상 기타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그 설치자에게 당해 기기의 사용정

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 3 / 조 제 2 항 · 제 3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검사거기의 설치자가 검사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미 교부한 검사증은 무효로 한다.

제 5 장 집단에너지 공급

제 38 조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이하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공장, 공업단지, 대형건물 및 주거지역 등에서의 열병합발전 및 집단난방에 관한 사항
2. 공업단지 및 발전소 등의 산업폐열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의 지정)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열공급사업의 허가) ①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를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이하 "열공급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㉔ 제1항의 기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㉕ 제20조·제21조 및 제22조의 기정은 열공급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업"을 "열공급사업"으로 "제조업자"를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제20조제1항제1호중 "제23조"를 "제47조"로 한다.

제47조 (열공급시설의 설치등) ①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열공급사업자"라 한다)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열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㉖ 동력자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공급구역 또는 열공급시설에 따라 제1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㉗ 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사업자로부터 사업개시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열공급사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열공급의무) ① 열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공급구역의 수요자에 대한 열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열공급사업자는 그 지정공급구역의 열공급시설을 사용하며 당해 공급구역 이외의 지역의 수요자에게 열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열공급규정의 인가) ① 열공급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공급구역·열공급요금 및 기타 열공급조건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인가받은 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열공급사업자는 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열공급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열공급시설) ① 열공급사업자는 열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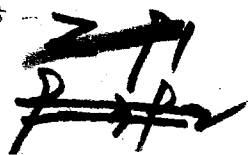
② 열공급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열공급사업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감독자를 정하여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게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 45조 (완성검사 등) 열공급사업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그 열공급시설의 사용전



에 동력자원부장관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열공급사업자는 그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열공급시설을 가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합적으로 된 열공급시설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가사용할 수 있다.

⑤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 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열공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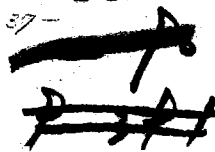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열공급 시설의 개선명령등) ① 열공급사업자는 열공급시설을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시설이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열공급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수리·개조를 명하거나 그 이전이나 사용의 정지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공급사업자에게 그 열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열공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 (열공급사업의 '허가취소'등) 동력자원부장관은 열공급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열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제 40 조 제 3 항에서 준용하는 제 20 조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 40 조 제 3 항에서 준용하는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3. 제 40 조 제 1 항 후단의 가정에 위반한 때
4. 제 4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 41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 제 42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공급사업을 한 때
8. 제 44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 45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0. 제 46 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영

령에 위반한 때

11.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2.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부정관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 8 장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금

제 48 조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금의 설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49 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유류의 특별소비세로 부터의 징수금
2.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차관
4.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의 석유류의 종류·징수비율 및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0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 52 조의 기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대출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 51 조 (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에너지 전환 사업
2. 에너지 절약형 ... 기차재의 연구·개발 및 생산
3. 에너지 절약형 시설 및 기차재의 시공 또는 설치
4.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사업

설의 도입과 시공

5.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대체에너지 이용기기
의 생산
 6.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
 7.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지도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가중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에너지 관리 공단

- 제52조(에너지 관리공단의 설립등) ① 에너지 이용합리
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리공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 및 운
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
을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출연시기 및 출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3 조 (법인적)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 54 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록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연수원 또는 지도소를 둘 수 있다.

제 55 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심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용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계약·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56 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 공단의 정관과 동력자원부장관의 공단설립인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주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7 조 (회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59 조 (임원) ①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3인 이내
4. 감사 1인

② 이사장 및 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 58 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0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한다.

㉔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 81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82 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할 때
4.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

제63조(임원의 겸직제한) ①공단의 임원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66 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의 추진
2. 에너지 관련 기술지도 및 기술도입 보급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에너지관리진단 및 지도
5.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증인 및 검사
6.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추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계몽 및 홍보
8.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이에 대한 대여 및 양도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여되는 사업
10.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

제 67 조(비용 부담) 공단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부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68 조(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11~~
~~2011~~

이사회와 의결을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9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 7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처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제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71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72 조 (에너지관리사의 교육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사의 자질향상과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관리사에게 에너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기기설치자는 제13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에너지관리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계속하여 2회이상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73 조 (보고 및 검사등)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시공업자, 열공급사업자 또는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시공업자, 열공급사업자 또는 검사기관의 사무소, 사업장, 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로 하여금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동력자원부장관은 열사용기자재가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품질이 조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당해 열사용 기자재의 파기, 수리 또는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방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 제 70 조제 3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74 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 24 조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열 사용 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3.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자질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 31 조 제 2 항 또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질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 4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 45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열 공급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 제 75 조 (권한의 위임·위탁)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 76 조 (이의신청) ①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김기현~~
~~김기현~~

시험기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
공단,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공단의 취
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취분이 있는
날로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동력자원
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성과조치의 위임) 제2조제6호의 규정
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 사용 기자재 또는 제3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기를 설치
하는 동력자원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당해 동력자원부령에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검사조치(별책에 관한 성과조치를 포함
한다)을 집행할 수 있다.

제 78 조 (명령의 변경·취소)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명령한 요건이 되었던 사실이 변경 또는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 79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지원사업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다) 에 관하여는 제 40 조 내지 제 47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원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0 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장 벌 칩

제 81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 19 조 제 1 항의 구성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한 자.
3. 제 19 조 제 3 항의 구성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사용 기자재를 수입한 자.
4. 제 24 조 제 1 항의 구성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열사용 기자재를 제조한 자.
5. 제 24 조 제 3 항의 구성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열사용 기자재를 수입한 자.
6. 제 27 조 제 1 항의 구성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업을 한 자.
7. 제 40 조 제 1 항의 구성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공급사업을 한 자.
8. 제 42 조 제 1 항의 구성에 위반한 자.

제 82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5 조 제 3 항의 구성에 위반한 자.
2. 제 31 조 제 2 항·제 4 항 또는 제 5 항 (제 37 조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성에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5조제1항(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 41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 42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 7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 7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 84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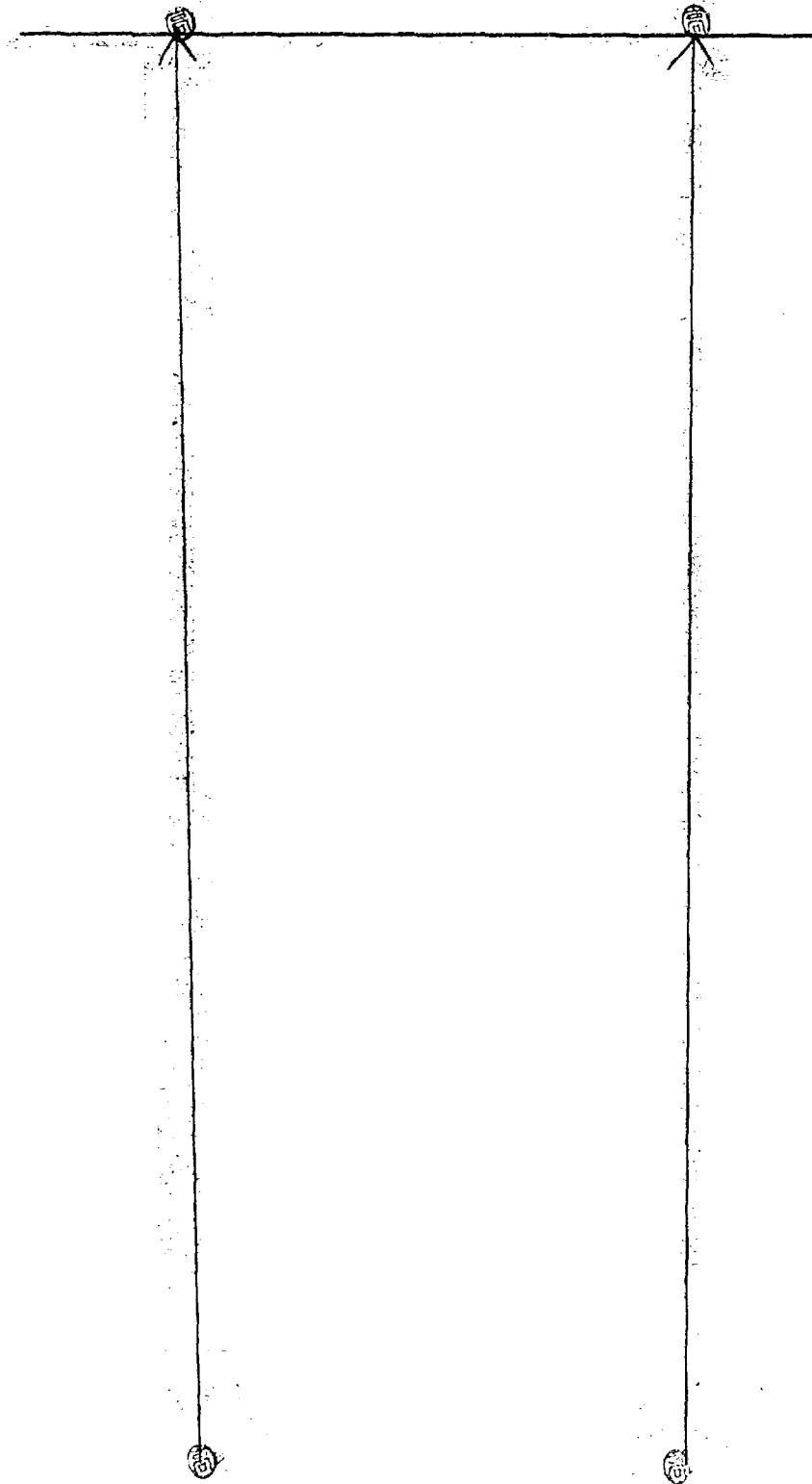
1. 제 6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 10 조제 1 항·제 13 조제 4 항 (제 36 조제 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 41 조제 4 항 또는 제 7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 22 조 (제 30 조제 2 항·제 35 조 및 제 40 조제 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 제 72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 8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1조 내지 제 8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86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 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 87조 (벌칙적용의 의제)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제 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제 15조 제 1항 또는 제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법률 제2042호 열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열관리진단기관은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에너지관리진단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원동기검사기사 및 원동기시공기능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기술업무에 종사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관리사로 본다.

79

- 59 -
2-7P
~~P-210~~

제 4 조 (열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 40 조 제 1 항의 기준이상의 열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2 조의 4 제 4 호중 " 열관리법 제 1 조" 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4 조" 로 한다.

제 6 조 (열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열관리협회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열관리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은 공단의 설립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출연으로 본다.

③ 공단이 승계한 열관리협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열관리협회의 명의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열관리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 7조 (설립비용등) 열관리협회의 해산비용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열관리협회가 부담한다.

제 8조 (설립준비)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
부터 1월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각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각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각 설립위원은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공단의 이사장
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각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제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공백